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제10조의2제6항 관련)

사업 부문	대상 사업의 범위
친환경기술개발 부문	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나. 오염유발 억제제품의 개발 또는 오염유발 억제제품을 응용·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다.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부문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부문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 나.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관련 사업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가. 수생태계의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등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친환경첨단기술 분야 지원 부문	디지털, IT산업 및 정보통신·문화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발전사업 중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유도를 지원하는 사업
기타 부문	가.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관광단지 정비 등과 같이 환경개선과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오염 개선사업 중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나. 한강수질개선에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